

□ 단지별 유치업종

단지명	입주대상업종	비고
나전 농공단지	식료품 제조업(C10), 섬유제품 제조업(C13)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C17)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C20)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C22)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) 1차 금속 제조업(C24),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(C25) 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(C26) 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(C27) 전기장비 제조업(C28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C30)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C31) 가구 제조업(C32)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(D35) 부동산 임대업(L6811)	식료품 제조업(C10) 중 C10801, 10802에 한함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(C17)중 C17211, 17212에 한함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(C23)중 C23991, 23995, 23999에 한함 ※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중 D35114에 한함. ※ 부동산임대업은 「산업집적법」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 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 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 하여 입주 허용